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35 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성환・장철민

민병덕 · 김현정 · 최기상

김태년 • 서미화 • 허 영

송옥주 · 신장식 · 김남근

이용우 • 전진숙 • 김 유

한창민 • 백승아 • 김문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,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,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,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.

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, 노무사,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,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. 따라서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

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.

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).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보건복지부"를 "그 밖에 보건복지부"로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
-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- 4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5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

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2제3 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・②	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		
	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		
	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		
	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	
	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		
	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		
	<u>사람</u>		
	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		
	<u>는 사람</u>		
	<u>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</u>		
	된 단체		
	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		
	로 구성된 단체		
	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		
	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		
	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		
	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		
	<u>다)</u>		
	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		
	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		
	문지식이 있는 사람		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 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 략)

<u>4.</u>	전국적	규모의	총연혁	합단체인
	노동단체]가 추초	하는	사람

- 5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
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
 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(고
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
 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
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
 공무원
- <u>④</u> 그 밖에 보건복지부-----
-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